함안 모로리 폐기물처리시설
(의료폐기물 소각시설) 조성사업

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

2019. 11.

(주)혜인

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
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○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에 비해 소각처분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불법 보관 및 부적정한 처리로 인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고,

○ 지역적으로 부산·경남지역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의 배출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최신 설비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서,

○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부족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조성하고자 함.

1.2 계획의 개요

1.2.1 계획의 추진 근거 및 환경영향평가 근거

가. 계획의 추진 근거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제8호

나. 환경영향평가 근거

○ 본 사업은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00톤/일 이상인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[별표3]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며,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.

<표 1.2 - 1>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15. 폐기물 처리시설·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	가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3)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	가)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나)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
사업의 규모	- 소각시설 처리용량 : 60ton/일×2기=120ton/일	

1.2.2 계획의 확정·결정·승인기관명

○ 승인기관 : 낙동강유역환경청

1.2.3 계획의 추진경위

가. 추진경위

○ 2019. 10 : 함안 모로리 폐기물처리시설(의료폐기물 소각시설)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착수

○ 2019. 10 ~ 11 :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(예정)

○ 2019. 12 :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(예정)

○ 2020. 01 ~ 02 : 환경영향평가(초안) 제출(예정)

○ 2020. 02 ~ 05 : 공고·공람,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

○ 2020. 06 : 환경영향평가(본안) 제출(예정)

○ 2020. 06 ~ 07 : 환경영향평가 협의(예정)

1.2.4 계획의 내용

가. 계 획 명 : 함안 모로리 폐기물처리시설(의료폐기물 소각시설) 조성사업

나. 위 치 :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614번지 일원

다. 계획시행자 : ㈜혜인

라. 계획기간 : 2019년 ~ 2021년

마. 계획의 내용

◦ 사업명 : 함안 모로리 폐기물처리시설(의료폐기물 소각시설) 조성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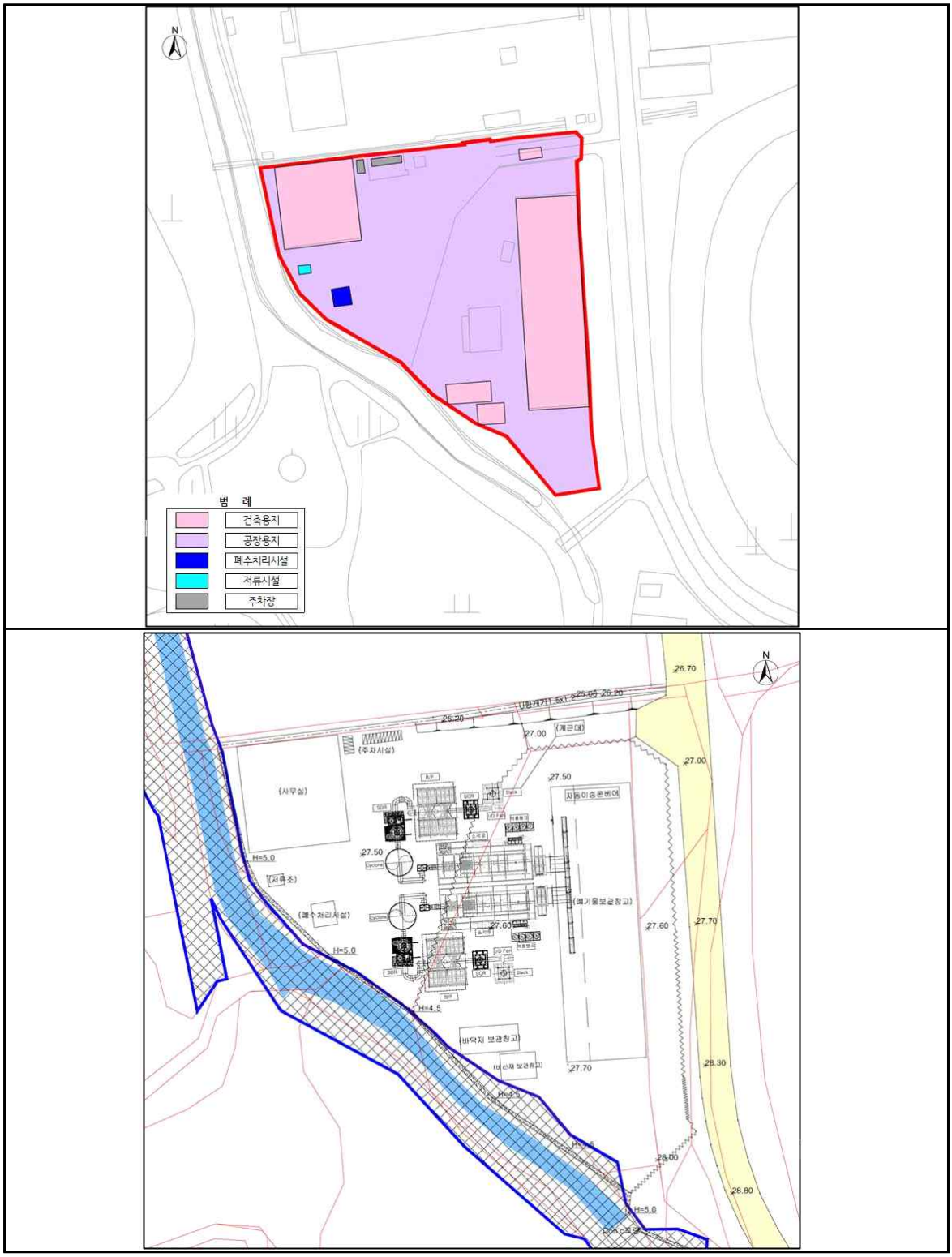
◦ 위치 :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614번지 일원

◦ 면적 및 용량 : 5,768㎡(2.5ton/시간×2기=120ton/일)

◦ 사업의 내용

<표 1.2 - 2>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계	5,768	100.0	
건축용지	1,621	28.1	사무실, 창고, 계근대
공장용지	4,089	70.9	
폐수처리시설	25	0.4	
저류시설	8	0.1	저류조
주차장	25	0.5	



(그림 1.2 - 1) 계획평면도 및 부지조성계획도



(그림 1.2 - 2) 사업지구 위성사진

제 2 장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

2.1 대상지역 설정

○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환경, 대기환경, 수환경, 토지환경, 생활환경, 사회·경제환경의 각 분야별 환경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
○ 이에 따른 영향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고자 시행계획(사업)의 특성, 입지여건, 지역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였으며, 「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(대기질・악취・소음・진동), 2013.1.1.,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」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을 참고 및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지역의 범위를 설정하였음.

<표 2.1 - 1> 대상지역 설정

항 목		검 토 내 용	대상지역
자연생태환경	동 · 식 물 상	- 동·식물과 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·간접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5.0㎞이내
	자연환경자산	- 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
대기환경	기상(부지기상)	- 사업지구 및 함안군 기상현황 파악 및 대기질 예측자료	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
	대 기 질	- 사업지구 내 대기질 변화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로 기상, 지형, 기존발생원,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	-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.0㎞
	악취	공장가동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물질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	-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.0㎞
	온실가스	- 사업지구 내 건설장비 가동 및 운영시 공장가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	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
수환경	수질	- 해당사업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, 규모 및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	- 사업지구 및 수용하천
토지환경	토 지 이 용	-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
	지형 · 지질	-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	- 사업지구
	토양	- 사업시행으로 인해 토양오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-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.0㎞

<표 계속>

항 목		검 토 내 용	대상지역
생활환경	친환경적 자원순환	- 사업지구 내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	- 사업지구
	소음·진동	- 사업지구 내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·진동에 의해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있는 지역까지 범위 설정	-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.0㎞
	경관	-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범위	-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.0㎞
	위생·공중보건	- 사업시행 시 대기오염물질, 수질오염물질, 소음·진동 등의 발생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	-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.0㎞
사회·경제환경	인구	-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·주거·산업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
	주거		
	산업		

2.2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등의 결정

가. 평가항목의 선정

○ 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검토항목은 사업의 유형별·단계별 환경영향인자를 고려하여 중점평가항목 10개, 일반평가항목 7개, 제외항목 4개를 선정하였으며,『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. 환경부고시 제2018-205호, 2018.12.12.』등을 참고하여 설정함.

<표 2.2 - 1> 평가항목의 선정

구 분		평가항목	선정(제외) 사유
중점평가항목(10개)	대기환경	대기질	-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변화
		악취	- 운영시 악취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
	수환경	수질	- 공사시 토사유출로 이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
	토지환경	토지이용	- 지목 및 용도별 토지이용 변화
		지형·지질	- 공사시 절·성토로 인한 지형 변화예상
	자연생태환경	동·식물상	- 식생 훼손 및 동·식물상의 변화
	생활환경	친환경적자원순환	-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등에 대한 영향
		소음·진동	-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·진동 영향
		경관	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현황 파악 - 사업지구로 인한 경관영향
		위생및공중보건	- 운영시 유해오염물질 등의 발생에 따른 영향
일반평가항목(7개)	대기환경	기상	-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
		온실가스	-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
	토지환경	토양	- 공사시 토양오염원 발생으로 인한 영향
	자연생태환경	자연환경자산	- 사업지구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
	사회경제환경	인구	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인구 변화 영향
		주거	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주거 현황 및 영향
		산업	- 운영시 주변지역 산업 등의 변화 예상
제외평가항목(4개)	수환경	수리·수문	-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
		해양환경	-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
	생활환경	전파장해	-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
		일조장해	-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

나.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

○ 환경영향의 예측·분석에 사용된 기법, 내용,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,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음.

- 조사는 문헌조사,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하고, 기존자료는 최신자료를 사용
-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사업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
-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수립

<표 2.2 - 2>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·예측 방법

항 목		현황조사	예측 및 평가방법
자연생태환경	동 · 식 물 상	① 조사내용 ○식물상 현황 ○동물상 현황 ○담수생물상 현황 ○특이할만한 종분포 및 서식현황 ○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범위 ○중점 :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○광역 : 사업지구 경계 반경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○사업지구 내 ○사업지구 경계 반경	○식물상 -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영향 훼손수목발생 및 예측 ○동물상 -분류군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○담수생물상 -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○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·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과 사업 시행으로 이들 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
	자연환경자산	① 조사내용 ○자연환경자산 현황 ② 조사범위 ○중점 : 사업지구 일대 ○광역 : 사업지구 경계 반경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○사업지구 경계 반경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피해 여부

<표 계속>

항 목		현황조사	예측 및 평가방법
대기환경	기상(부지기상)	① 조사내용 ○사업지구 및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부지기상 및 주변 기상대 ③ 조사방법 ○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·정리 및 현지부지기상 조사	○기상연보 ○기상대 또는 필요 시 자료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
	대 기 질	① 조사내용 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현황 오염원 면·선·점 파악 ② 조사범위 ○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및 현지조사	○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 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누적평가 ○각 오염원은 모델링을 통하여 예측
	악취	① 조사내용 ○사업지구 주변 악취현황파악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○현지조사	○사업시행 시 약취물질 발생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및 평가
	온실가스	① 조사내용 ○사업지구 주변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관련계획 현황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○자료 참고 및 유사 사업 분석	○기존자료 및 유사 평가사례 분석, 정리
수환경	수질	① 조사내용 ○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인근 하천 등 수계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및 현지조사	○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○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○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부하량 예측 ○운영 시 급수, 우·오수 처리계획

<표 계속>

항 목		현황조사	예측 및 평가방법
토지환경	토 지 이 용	① 조사내용 ○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○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및 현지조사	○사업시행 전·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파악
	지형 · 지질	① 조사내용 ○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검토, 특이지형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내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및 현지조사	○절·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○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 발생 등
	토양	① 조사내용 ○사업지구 내외 토양 현황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및 현지조사	○공사 시 폐유 등의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토양 오염도 예측 ○운영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예측
생활환경	친환경적 자원순환	① 조사내용 ○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○문헌조사 조사	○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공종별, 종류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○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 방안 제시 ○운영시 반입폐기물 처리 방안 등
	소음·진동	① 조사내용 ○소음·진동 현황, 주요발생원조사 ○정온시설을 포함한 사업지구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 확인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반경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및 현지조사	○공사 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·진동 영향예측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

<표 계속>

항 목		현황조사	예측 및 평가방법
생활환경	경관	① 조사내용 ○경관 우수지역 현황 ○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○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(근경·중경·원경)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○조망점별 경관시뮬레이션 실시 ○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
	위생·공중보건	① 조사내용 ○인구 및 보건, 상하수도 현황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및 현지조사	○유해오염물질 발생 등에 따른 위생공중보건 영향 예측 및 그에 따른 저감방안 제시
사회·경제환경	인구	① 조사내용 ○인구 현황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조사	○문헌자료를 이용한 함안군 인구현황 조사
	주거	① 조사내용 ○주거 현황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조사	○문헌자료를 이용한 함안군 주거현황 조사
	산업	① 조사내용 ○함안군 산업 현황 ② 조사범위 ○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조사	○문헌자료를 이용한 함안군 산업현황 조사

제 3 장 의견수렴 계획

3.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

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

- 본 사업의 관계 시·군인 함안군의 홈페이지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할 것임.

3.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

가. 주민 등의 의견 수렴

○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

- 본 사업의 관계 시·군인 함안군의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할 것임.

○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

- 경상남도 함안군청 관련과 및 군북면사무소 등에 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.
- 공람장소는 함안군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임.

○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5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,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·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할 것이며,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시행령 제35조, 38조 규정에 의거 관련 행정기관에 초안을 제출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토록 할 것임.
-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기로 할 것임.

○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(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.

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

4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

환경부

낙동강유역환경청

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[(주)혜인] 폐기물처리사업(의료소각) 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 심의 요청

1.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2. (주)혜인의 폐기물처리사업(소각시설) 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귀하를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3. 또한, (주)혜인에서 제출한 '환경영향평가준비서'에 대해 서면 심의를 요청하오니 「붙임 3」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시어 '19.10.30(수)까지 우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협 의 회 : (주)혜인 폐기물처리사업(소각시설) 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
나. 구 성 : 위원장(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)외 위원 9명
다. 심의방법 : 서 면
라. 심의기간 : 2019.10.17 ~ 2019.10.30 (10일간)
마. 심의내용 :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적정성, 환경보전방안의 대안, 평가항목 및 범위, 방법 등

※ 심의결과 통보서 제출방법 : 전자문서, 전자우편(mpol49@korea.kr), 우편송부

붙임 1.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1부.
2.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1부.
3.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통보서(서식) 1부. 끝.

2-1

4.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

심의의견	조치계획
1. 총괄	
○ 대기질, 악취, 위생·공중보건 등의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[1]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면밀한 배출량 산정 및 위해성 평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계절별, 기상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영향예측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평가서를 작성 1) 공장 등 점오염원이 혼재된 골짜기 형태의 지형(대기정체), 환경피해에 취약한 노령 주민과 일부 한센병 환자 거주	○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질, 악취, 위생·공중보건(건강영향평가)에 대하여 계절별, 기상별 등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음. 특히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하여 면밀한 배출량 산정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음.
○ 소각 시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저감계획과 방지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별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소각시설 용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	○ 소각 시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저감계획을 수립하고, 방지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은 물질별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음. 또한, 소각시설 용량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겠음.
○ 인근 주민에 직·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사업으로 인근마을은 물론 군북면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설명회·공청회를 통해 본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,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합의점 도출	○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 및 군북면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여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,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,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.
2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	
○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·설정 - 대기질(악취포함)은 연돌높이, 계절의 주 풍향 및 풍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최대 확산지점까지 평가대상지역범위 포함 - 운영시 토양 영향권역은 대기질 항목과 연계하여 대기오염물질 확산 가능범위를 고려하여 설정 - 계획부지 인근 주거지역, 교육시설, 산업시설 등을 조사하고 폐기물운반차량 이동경로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	○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. - 대기질(악취포함) 등은 '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(대기질,악취,소음진동),20130101, 환경부'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정하였음. - 토양 영향권역은 대기질 항목과 연계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. - 계획부지 인근 주거지역, 교육시설, 산업시설 등을 조사할 것이며, 폐기물운반차량 이동경로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토록 하겠음.

심의의견	조치계획
○ 사업지역 주변에서 계획 또는 공사·운영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범위가 중첩되는 지역은 누적영향을 평가	○ 사업지역 주변에서 계획 또는 공사·운영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범위가 중첩되는 지역은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겠음.
○ 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, 환경영향의 예측·분석에 사용된 기법,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	○ 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, 환경영향의 예측·분석에 사용된 기법,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겠음.
○ 대기질, 악취, 위생·공중보건 등의 조사지점을 폐촉법에서 규정한 직접 및 간접지역에 대해 사업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설정하여 추가	○ 대기질, 악취, 위생·공중보건 등의 조사지점을 폐촉법에서 규정한 직접 및 간접영향권에 대해 사업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설정하여 선정하겠음.
○ 계획지구 동측의 함안면사무소 및 함안군청 인근 지역(약7.5km 이격)과 북측 의령군청 및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지역(약 7.0km 이격)을 영향예상 대상지점으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	○ 사업지구 동측의 함안면사무소 및 함안군청 인근 지역과 북측 의령군청 및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지역을 영향예상 대상지점으로 추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.
3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	
○ 동 사업에 대한 입지 관련 대안 검토를 실시하여 입지타당성 제시	○ 본 사업에 대한 입지 대안을 검토하여 입지타당성을 제시하겠음.
○ 본 사업시행에 따른 차별성 있는 대안을 3개 이상 설정(no action 포함)하여 비교·검토한 후 장·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	○ 본 사업시행에 따른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(no action 포함)하여 비교·검토한 후 장·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토록 하겠음.
○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및 위해성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대상 물질별 저감시설, 임계가중배출량 산정·관리 또는 소각시설 규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, 저감시설의 경우 가급적 최고 효율의 저감시설을 설치・운영하는 계획을 수립 ※ 환경부. 2017. 「건강영향평가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」 등 참조	○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및 위해성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대상 물질별 저감시설, 임계가중배출량 산정·관리 또는 소각시설 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, 저감시설은 가급적 최고 효율의 저감시설을 설치・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.

심의의견	조치계획
4.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등	
○ 평가항목별로 입지에 따른 현황,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	○ 평가항목별로 입지에 따른 현황,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 등을 정량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겠음.
○ 문헌자료로 인근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이용 시에는 최근자료를 활용하고, 예측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회 환경영향 예측의 정확성을 분석·제시	○ 문헌자료로 인근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이용 시에는 최근자료를 검토하여 활용할 계획이며, 예측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제시하겠음.
<인구·주거>	
- 계획지구 반경 5㎞를 영향예상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는바, 해당 영역 내 단독주거지를 포함한 주거시설, 교육・의료시설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분포현황을 면밀히 조사	- 대상지역으로 설정한 계획지구 반경 5㎞ 지역 내 단독주거지를 포함한 주거시설, 교육・의료시설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분포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시하겠음.
- 본 사업으로 인해 환경적, 사회적, 경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구 파악 및 장래 인구 주거 변화 예측 뿐 만 아니라 사업 시행을 통한 민원 대책계획을 제시	- 본 사업으로 인해 환경적, 사회적, 경제적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고, 사업 시행을 통한 민원 대책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.
<기상·대기질·악취>	
- 기상은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,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고, 계획지역 주변 기상청 AWS 자료, 인근 개발사업의 기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상관성 분석 후 대기질 모델링에 사용	- 기상은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,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, 계획지역 주변 기상청 AWS 자료, 인근 개발사업의 기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상관성 분석 후 대기질 모델링에 사용토록 하겠음.
- 대기질 현황조사는 1년 이상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의 측정을 통하여 영향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, 인근 자동측정망 등을 활용하여 물질별 환경기준치 만족 여부 검토	- 대기질 현황조사는 1년 이상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의 측정을 실시하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영향예측을 실시하고, 인근 자동측정망 등을 활용하여 물질별 환경기준치 만족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겠음.
- 연돌제원, 연돌고 선정시 고려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운영시 연돌에 의하여 발생가능한 유동특수현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	- 연돌제원, 연돌고 선정시 고려된 사항 등을 명시할 것이며, 운영시 연돌에 의하여 발생가능한 유동특수현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.
- 소각장 운영시 주변의 토지이용현황(주거지, 농경지 등) 및 유사시설의 소각대상폐기물 성상을 고려하여 유해가스(다이옥신 등)와 분진, 중금속, 악취 등에 관한 관리방안 수립	- 소각장 운영시 주변의 토지이용현황(주거지, 농경지 등) 및 유사시설의 소각대상폐기물 성상을 고려하여 유해가스(다이옥신 등)와 분진, 중금속, 악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.

심의의견	조치계획
-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·악취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지역 내 정온시설 분포현황(주거, 교육 등)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평가	-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·악취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지역 내 정온시설 분포현황(주거, 교육 등)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겠음.
- 의료폐기물 처리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기 및 접촉 감염 등의 문제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며, 소각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변 환경 변화에 중점을 두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반영	- 의료폐기물 처리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기 및 접촉 감염 등의 문제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, 소각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계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음.
- 주변 대기오염배출오염원을 포함하여 총괄적 대기오염 상황을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며, 소각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주변 마을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대기오염 영향을 예측모델선정에 반영	- 주변 대기오염배출오염원을 포함하여 총괄적 대기오염 상황을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, 소각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주변 마을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으로 두고 대기오염 영향 예측모델을 선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음.
- 냉장보관 등 의료폐기물의 특성상 발열량 불균형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 및 중금속 등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대책과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저감효율의 신뢰성 있는 문헌 또는 근거자료 제시	- 발열량 불균형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 및 중금속 등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대책과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저감효율의 신뢰성 있는 문헌 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음.
-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과 법상 배출허용기준(가스상 및 입자상)을 제시하고 소각시설 운영시 발생된는 연소가스 중 함유된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저감계획 제시	-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과 법상 배출허용기준(가스상 및 입자상)을 제시하고 소각시설 운영시 발생된는 연소가스 중 함유된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저감계획을 제시하겠음.
<수질>	**<수질>**
- 운영시 발생폐수 및 비점오염물질의 처리계획 및 수질(생태계 포함)에 미치는 영향 검토	- 운영시 발생폐수 및 비점오염물질의 처리계획 및 수질(생태계 포함)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.
<친환경적 자원순환>	**<친환경적 자원순환>**
-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각대상 폐기물양을 산정하고 소각시설 방식별 장·단점 및 처리용량의 적정성을 검토·제시	- 본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소각대상 폐기물 양을 산정하고 소각시설 방식별 장·단점 및 처리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.
- 소각시설의 발생폐열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재이용에 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	- 소각시설의 발생폐열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재이용에 관해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음.

심의의견	조치계획
<위생·공중보건>	
- 사업시행으로 설치 될 세부공정을 고려하여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모든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조사하고 계절별 특이성이 반영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(저감시설 설치, 규모 축소 등)을 수립	- 사업시행으로 설치 될 세부공정을 고려하여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모든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조사하고 계절별 특이성이 반영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(저감시설 설치, 규모 축소 등)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.
- 국내·외 관련 배출계수 문헌을 비교·분석하고, 배출계수 중 최대값을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	- 국내·외 관련 배출계수 문헌을 비교·분석하고, 배출계수 중 최대값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토록 하겠음.
-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으로 배출 예상되는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과 이에 기반한 면밀한 위해성 평가, 최고 효율의 저감방안 수립	-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으로 배출 예상되는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고, 이에 따른 면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, 최고 효율의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.
· 영향예상 대상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수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영향평가에 활용	· 영향예상 대상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수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영향평가에 활용토록 하겠음.
※ KEI. 2017. 「환경영향평가서 위생·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」 등 참조)	※ KEI. 2017. 「환경영향평가서 위생·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」 등 참조)
· 계획지구 주변 기존 오염원 및 신규 조성 예정인 오염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며,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계절별 현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현황조사 필요	· 계획지구 주변 기존 오염원 및 신규 조성 예정인 오염원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고,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계절별 현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실시하겠음.
· 문헌조사, 유사 시설의 실측 자료, 소각시설 설계자료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배출 예상되는 모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필요, 보수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, 위해성평가 실시	· 문헌조사, 유사 시설의 실측 자료, 소각시설 설계자료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배출 예상되는 모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고, 보수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, 위해성평가 실시토록 하겠음.
- 처리능력이 100톤/일 이상으로 의료폐기물의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·공중보건 대책 수립	- 처리능력이 100톤/일 이상으로 의료폐기물의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·공중보건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.
<자연생태환경>	
- 자연생태환경 조사범위 설정에 있어 평가대상지역을 0.5km로 제시하였으나 위생·공중보건 평가대상지역에 준하여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km로 확대	- 자연생태환경 조사범위를 위생·공중보건 평가대상지역에 준하여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km로 확대하여 설정하겠음.
- 토양 및 수질오염, 온실가스, 세균감염 등으로 농작물(벼, 수박, 채소 등) 및 가축 등의 피해에 대한 사항 검토	- 토양 및 수질오염, 온실가스, 세균감염 등으로 농작물(벼, 수박, 채소 등) 및 가축 등의 피해에 대한 사항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제시하겠음.

심의의견	조치계획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	
○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,	○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음.
○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한 공람·공고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	○ 또한,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함안군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공람·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음.
○ 의료폐기물의 조성 및 해당 시설의 운영 시 발생 가능한 환경 및 건강영향을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내용으로 명확히 공개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실시	○ 의료폐기물의 조성 및 해당 시설의 운영 시 발생 가능한 환경 및 건강영향을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내용으로 명확히 공개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토록 하겠음.
7. 기 타	
○ 폐기물처리사업(의료소각시설)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수 있는 다각적인 설득과 노력이 필요함.	○ 폐기물처리사업(의료소각시설)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수 있는 다각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.
○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3.1.2 환경기준 내용중에서 대기질 환경기준의 PM-2.5 변경<P.14> 항목 그리고 호소수질 환경기준의 TOC 항목 추가<P.15> 등에 대해 최근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함.	○ 대기질 환경기준의 PM-2.5, 호소수질 환경기준의 TOC 항목 등에 대해 최근변경사항으로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겠음.
○ 평가준비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 오타 수정이 필요함(정읍시<P.8>, 창녕구능로<P.8>, 공원지정면적<P.10>, 삽교천<P.26>	○ 평가서 작성시 오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음.
○ 평가준비서에는 사업의 규모가 제시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제시한 바, 평가서 작성 시 환경영향예측 및 폐기물처리시설·보관시설의 필요부지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계획부지 내 허용가능한 용량의 사업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 평가서에 사업의 규모를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검토하고, 평가서 작성 시 환경영향예측 및 폐기물처리시설·보관시설의 필요부지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계획부지 내 허용가능한 용량의 사업계획을 수립·제시하겠음.
○ 동 심의결과를 반영·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·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.	○ 심의결과를 반영·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·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토록 하겠음.
○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(제2018-205호, 2018.12.12)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.	○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(제2018-205호, 2018.12.12)에 따라 작성토록 하겠음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[(주)혜인 폐기물처리사업(소각시설) 계획]

< 사 업 개 요 >

○ 위　　치 : 경남 함안군 군북면 여명로 253
○ 사업규모 : 폐기물 소각시설 60톤/일 × 2기
○ 사업자 / 승인기관 : (주)혜인 / 낙동강유역환경청
○ 사업기간 : 2019년 ~ 2020년

1. 총괄

○ 대기질, 악취, 위생·공중보건 등의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[1]**지역적 특성**을 고려하여 특히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면밀한 배출량 산정 및 위해성 평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계절별, 기상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영향예측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평가서를 작성

[1] 공장 등 집오염원이 혼재된 공業기 형태의 지역(대기정체), 환경피해에 취약한 노령 주민과 일부 한센병 환자 거주

○ 소각 시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저감계획과 방지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별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소각시설 용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

○ 인근 주민에 직·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사업으로 인근마을은 물론 군북면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설명회·공청회를 통해 본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,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합의점 도출

2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·설정

- 대기질(악취포함)은 연돌높이, 계절의 주 풍향 및 풍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최대 확산지점까지 평가대상지역범위 포함
- 운영시 토양 영향권역은 대기질 항목과 연계하여 대기오염물질 확산 가능범위를 고려하여 설정
- 계획부지 인근 주거지역, 교육시설, 산업시설 등을 조사하고 폐기물운반차량 이동경로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

○ 사업지역 주변에서 계획 또는 공사·운영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범위가 중첩되는 지역은 누적영향을 평가

○ 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, 환경영향의 예측·분석에 사용된 기법,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

○ 대기질, 악취, 위생·공중보건 등의 조사지점을 폐측법에서 규정한 직접 및 간접지역에 대해 사업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설정하여 추가

○ 계획지구 동측의 함안면사무소 및 함안군청 인근 지역(약7.5km 이격)과 북측 의령군청 및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지역(약 7.0km 이격)을 영향예상 대상지점으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

3. 환경보전방안의 대안

○ 동 사업에 대한 입지 관련 대안 검토를 실시하여 입지타당성 제시

○ 본 사업시행에 따른 차별성 있는 대안을 3개 이상 설정(no action 포함)하여 비교·검토한 후 장·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

○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및 위해성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대상물질별 저감시설, 임계가중배출량 산정·관리 또는 소각시설 규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, 저감시설의 경우 가급적 최고 효율의 저감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계획을 수립

※ 환경부, 2017. 「건강영향평가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」 등 참조

4.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평가항목별로 입지에 따른 현황,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

○ 문헌자료로 인근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이용 시에는 최근자료를 활용하고, 예측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회 환경영향 예측의 정확성을 분석·제시

<인구·주거>

- 계획지구 반경 5㎞를 영향예상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는바, 해당 영역 내 단독주거지를 포함한 주거시설, 교육·의료시설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분포현황을 면밀히 조사
- 본 사업으로 인해 환경적, 사회적, 경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구 파악 및 장래 인구 주거 변화 예측 뿐 만 아니라 사업 시행을 통한 민원대책계획을 제시

<기상·대기질·악취>

- 기상은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,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고, 계획지역 주변 기상청 AWS 자료, 인근 개발사업의 기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상관성 분석 후 대기질 모델링에 사용
- 대기질 현황조사는 1년 이상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의 측정을 통하여 영향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, 인근 자동측정망 등을 활용하여 물질별 환경기준치 만족 여부 검토
- 연돌제원, 연돌고 선정시 고려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운영시 연돌에 의하여 발생가능한 유동특수현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
- 소각장 운영시 주변의 토지이용현황(주거지, 농경지 등) 및 유사시설의 소각대상폐기물 성상을 고려하여 유해가스(다이옥신 등)와 분진, 중금속, 악취 등에 관한 관리방안 수립
-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·악취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지역 내 정온시설 분포현황(주거, 교육 등)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평가
- 의료폐기물 처리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기 및 접촉 감염 등의 문제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며, 소각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변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반영
- 주변 대기오염배출오염원을 포함하여 총괄적 대기오염 상황을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며, 소각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주변 마을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대기오염 영향을 예측 모델선정에 반영
- 냉장보관 등 의료폐기물의 특성상 발열량 불균형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 및 중금속 등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대책과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저감효율의 신뢰성 있는 문헌 또는 근거자료 제시
-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과 법상 배출허용기준(가스상 및 입자상)을 제시하고 소각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연소가스 중 함유된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저감계획 제시

<수질>

- 운영시 발생폐수 및 비점오염물질의 처리계획 및 수질(생태계 포함)에 미치는 영향 검토

<친환경적 자원순환>

-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각대상 폐기물양을 산정하고 소각시설 방식별 장·단점 및 처리용량의 적정성을 검토·제시
- 소각시설의 발생폐열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재이용에 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

<위생·공중보건>

- 사업시행으로 설치 될 세부공정을 고려하여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모든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조사하고 계절별 특이성이 반영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(저감시설 설치, 규모 축소 등)을 수립
- 국내·외 관련 배출계수 문헌을 비교·분석하고, 배출계수 중 최대값을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
-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으로 배출 예상되는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과 이에 기반한 면밀한 위해성 평가, 최고 효율의 저감방안 수립
  · 영향예상 대상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수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영향평가에 활용

※ KEI. 2017. 「환경영향평가서 위생·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」 등 참조)

  · 계획지구 주변 기존 오염원 및 신규 조성 예정인 오염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며,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계절별 현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현황조사 필요
  · 문헌조사, 유사 시설의 실측 자료, 소각시설 설계자료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배출 예상되는 모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필요, 보수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, 위해성평가 실시
- 처리능력이 100톤/일 이상으로 의료폐기물의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·공중보건 대책 수립

<자연생태환경>

- 자연생태환경 조사범위 설정에 있어 평가대상지역을 0.5km로 제시하였으나

위생·공중보건 평가대상지역에 준하여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km로 확대

- 토양 및 수질오염, 온실가스, 세균감염 등으로 농작물(벼, 수박, 채소 등) 및 가축 등의 피해에 대한 사항 검토

6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

○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,

○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한 공람·공고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

○ 의료폐기물의 조성 및 해당 시설의 운영 시 발생 가능한 환경 및 건강영향을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내용으로 명확히 공개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실시

7. 기 타

○ 폐기물처리사업(의료소각시설)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수 있는 다각적인 설득과 노력이 필요함.

○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3.1.2 환경기준 내용중에서 대기질 환경기준의 PM-2.5 변경 <P.14> 항목 그리고 호소수질 환경기준의 TOC 항목 추가<P.15> 등에 대해 최근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함.

○ 평가준비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 오타 수정이 필요함(정읍시<P.8>, 창녕구능로<P.8>, 공원지정면적<P.10>, 삼교천<P.26>

○ 평가준비서에는 사업의 규모가 제시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제시한 바, 평가서 작성 시 환경영향예측 및 폐기물처리시설·보관시설의 필요부지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계획부지 내 허용가능한 용량의 사업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

○ 동 심의결과를 반영·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·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.

○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(제2018-205호, 2018.12.12)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.

2019. 11.

(주)희인 폐기물처리사업(소각시설) 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(인)

-

-

-